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992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영천시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가소266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

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5. 11.부터 영천시 야사동 244-2 학교용지 2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의 공매절차에서 2004. 8. 11.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달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12.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927호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소로 2류) 결정이 고시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도로부분은 포장된 상태로 인근 강변빌라의 주민들의 주변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4의 각 영상,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하여 이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우수맨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로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판결,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132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는 통상 ① 도시계획의 결정, 결정의 고시(제4조, 제7조), ②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제10조), ③ 도로공사의 과정을 거쳐 설치하게 되는바, 위 도시계획시설(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로 2류) 결정 고시는 위와 같은 도로계획법 상의 도로설정 과정에

있어 이 사건 도로부분을 포함한 해당 지역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 56167 판결 참조), 위 도로계획시설결정 고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관리청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점유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수맨홀 또는 기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포장공사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 유무,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서희경

 판사 손승우